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9. 2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9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9월 14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59회 임시회 제7차 행정위원회('98. 9.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조남성)

가. 제안이유

- 21세기 본격적인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자치행정체계 정비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 조직으로 기구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감축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경쟁력 있는 구정을 지향하는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조정 (1년 단축)
 - 현행 53세 ----> 52세
- 경노무(사환)를 폐지 -> 정원감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준석)

동 조례(안)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방행정기구의 감축과 더불어 일반직 공무원 정년이 1년 단축되면서 고용직공무원도 1년 단축하고 향후 동사무소 기능 등이 축소 전환될 것으로 보아 경노무(사환)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직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
----------	----

제출년월일 : 1998. 9. 12.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사유

21세기 본격적인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자치행정체계 정비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 조직으로 기구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감축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 경쟁력 있는 구정을 지향하는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조정 (1년 단축)
- 현행 53세 → 52세
- 경노무(사환)를 폐지 → 정원감축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 ⇒ 시정 12200-600('98. 6. 22)
- '98 지방공무원 제도개선 관련 회의자료 ⇒ 행정자치부('98. 6. 15)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서울특별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직 종	직 명	근무상한연령
1 종	지 도 원	52세

비고 :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상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은 1945년 7월 1일생부터 1945년 12월 31일생은 1998년 12월 31일에, 1946년 1월 1일부터 1946년 12월 31일생은 1999년 6월 30일에, 1947년 1월 1일생부터 1947년 6월 30일생은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근무상한연령으로 한다. 다만, 경노무(사환) 공무원이 초과 현원인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별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별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직 종 구분	1 종	경노무	직 종	직 명	근무상한연령
직 명	지 도 원	사 환	1 종	지 도 원	52세
근무상한연령	53세	23세			
비고 :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비고 :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